KOSHA GUIDE

C - 79 - 2015

- (2) 피해경감계획에는 비상시 대피시설의 설치, 정기적인 비상대피훈련의 실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(3) 발화물질,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는 때에는 지정된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하며, 이를 임시로 적재하는 때에는 적재장소의 허가 절차와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4) 용접작업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방화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용접 불꽃으로 인한 점화원이 화재로연결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5) 가능하면 본 구조물에 사용되는 소방배관 및 수전반을 조기에 완공하여 공사 중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.
- (6) 기타 화재예방 관련 자세한 사항은 KOSHA GUIDE C-91-2015(초고층 건축물 공사(화재예방) 안전보건작업지침)에 따른다.